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8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이영실, 김경훈, 김성준,
김원태, 김태수, 남창진,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박춘선, 박칠성, 송도호,
오금란, 왕정순, 유만희,
이병도, 이소라,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정준호,
최기찬, 최재란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을 의미하며, 이를 적절히 보전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임.
-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서울시의 자연환경 보전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10호).
- 나.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정리함(안 제6조제3항제1호).
- 다.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신설함(안제16조제2항, 제16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제6조제3항제1호 중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를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태계 보전 등 시책 수립) 시장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u> <u>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u> <u>말한다.</u> <u>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u> <u>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u> <u>서비스</u> <u>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u> <u>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u> <u>절서비스</u> <u>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u> <u>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u> <u>스</u> <u>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u> <u>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u> <u>지지서비스</u>
② (생 략) 제6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 립) ①、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 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2. ~ 6. (생략)

④、⑤ (생략)

제16조(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생략)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 (생략)

③ (생략)

〈신설〉

③ -----
-----.

1.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2.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생태계 보전 등 시책 수립) 시장은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